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국토교통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관련한 서류접수 방법을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 합니다 (※건본주택 방문접수 불가)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건본주택에서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와 청약신청 및 등·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 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3개동 총 96세대
[특별공급 57세대(일반[기관추천] 9세대, 경제자유구역 9세대, 다자녀가구 9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총 9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공급세대수의 10%범위 내 공급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등은 미정이며, 추후 모집승인 완료 시 모집공고 참조]
- 입주자 모집 공고 2021년 10월 15일(금) 예정
- **주택형별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계
총 세대수		16	16	8	8	16	16	8	8	96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당첨 확정	2	2	1	1	1	2	0	0	9
	예비자	10	10	5	5	5	10	0	0	45

II 공급 일정 안내

구분		일시	비고
특별공급 사전접수 (등기우편 접수)		'21년 10월 04일(월)까지	* 우편 접수 주소(※등기 발송 필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32번지 에스원타워 2층 206호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홍보관) * 우편 소인 날짜 기준 : '21년 10월 04일(월) 우편 소인까지 인정 *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미비 기준 : 서류 미비, 인장 누락, 서명 누락 등)
예정 일정	입주자모집공고	'21년 10월 15일(금)	* 일간신문 및 분양 홈페이지(www.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com)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대상자 선정 결과	'21년 10월 21일(목)	* 개별 SMS 통보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1년 10월 25일(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8:00~17:30)
	당첨자 등·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1년 11월 02일(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체결	'21년 11월 15일(월) ~ 17일(수)	*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32번지 에스원타워 2층 206호(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홍보관)

-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사업주체 건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후 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가 된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으로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사업자등록증 하단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여부 : 여(V) 부() 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된 사업장 명세]도 함께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재직회사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인사기록카드 1부	재직회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재직한 기간 확인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건강보험관리공단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주택특별 공급신청서	-	소속업체 인감 날인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무주택서약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이용시간 08:00~17:30) ※모집공고 예정일 기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본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필수
내국인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 전체 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1부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 (상세발급)
		○	기타	-	추후 동점자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본인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본인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본인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본인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회사	법인 신청의 경우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1.10.15.(금) (예정)** 3개월 이전까지 발행분(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가능 합니다.(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분양 홈페이지(www.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com)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상 신청 시) 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이전까지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시 기존 통장으로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합니다.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적용)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후 일부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11.19.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에 의거 주택의 공유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공유지분 5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 전받은 단독주택

☞ (적용) 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적용)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업무분야에 주택판매나 분양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적용) 20㎡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적용)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적용) 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합니다.

8.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적용) 무허가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적용)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주택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분양권가격은 계약서상의 공급가격으로 산정) 소형·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2호 이상 보유시에 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적용)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인정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V 대상자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방법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나목을 적용합니다. 본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름.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그 선정결과를 통보함.

VI 유의 사항

-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우편 접수'로 변경 됩니다. 건물 주택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우편 접수(등기)**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타 지역 사업장 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이 된 경우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구비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청약자 본인에 한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중복 청약을 허용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자동 무효처리 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모두 가능하나,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흥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청약 신청은 1세대 1건만 청약 가능**하므로,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 부부가 각각 경제자유구역 장기근속으로 특별공급 당첨확정자가 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1인만 청약가능)
(ex 남편 : 경제자유구역 당첨확정자로 청약, 부인 : 다자녀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확정자, 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된 타입 외 다른 타입 청약 시 당첨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전매제한 기간 내 전출 또는 퇴직,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공급 받은 주택은 계약취소가 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재공급 하게 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타 지역 발령(인천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미충족 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 () - 휴대폰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책 및 직위	
소재지주소			☎() -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		

2. 가족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illegible]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하나만 선택하여 “V” 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외 2필지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4. 첨부서류

공통서류	확인	내국인	확인	외국인, 재외국민	확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원본대조 필)	☐	1. 신분증 사본	☐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 필)	☐	2. 주민등록표등본(본인)	☐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외국인)	☐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의 경우)	☐	3. 가족관계증명원(본인)	☐	3.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재외국민)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의 경우)	☐	4.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	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국민)	☐
5. 재직증명서(소속업체 인감 날인)	☐	5.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6. 인사기록카드(원본대조 필)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포함 전체발급)	☐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업체 인감 날인)	☐				
9.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소속업체 인감 날인)	☐				
10. 무주택서약서(신청인 본인 인감 날인)	☐				
1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	☐				
12.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이용시간 08:00 ~ 17:30)	☐				
13. 기타 (특별공급 접수를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서류)	☐				

※ 확인란 “□” 칸에 “V”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 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세대주와의관계 : _____

신청인 신청인본인성명 (인감날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소속업체명 (소속업체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성 명	(인)	신청주택형	☐ 84A ☐ 84D	☐ 84B ☐ 84E	☐ 84C ☐ 84F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 10. 15.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감날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인감날인)
2021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 _____ (인감날인) 대리 신청시 대리인 : _____ (인)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사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 미동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연락처			
주소	시	구	동

■ 개인정보 수집·활용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창보종합건설주식회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항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개인정보 및 제출된 서류 일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목적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분양완료 후 30일 이내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실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신청인본인성명 (인감날인)